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공개 등의 근거 규정 마련>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5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공개 등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5.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공개 등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 개최 당일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전자서

현 행	개 정 안
	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경과기원은 정관[1]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음.

□ 개정안은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와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함.

[표] 현행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와 개정안의 내용 비교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개정안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개정안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대경과기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과기원의 공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 수준으로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수정 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